

# 중국의 문화재 관리

최 무 장\*

## 목 차

- |              |                      |
|--------------|----------------------|
| I. 머리말       | V. 지하문화재관리           |
| II. 문화재보호법   | VI. 기타 문화재의 관리       |
| III. 문화재보호단위 | VII. 문화재보호기구의 임무와 장려 |
| IV. 매장문화재관리  | <참고문헌>               |

## I. 머리말

중국의 면적은 960만km<sup>2</sup>로서 그 면적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 현재 행정구역은 30개로 나뉘어 있다. 세곳의 직할시: 北京, 天津, 上海가 있으며 5개의 自治區: 內蒙古, 寧夏, 廣西, 新疆, 西藏 그리고 河北을 위시로 22개 省이 있다. 문화재를 취급하는 행정부서로 國務院, 국가문화행정부처, 省, 自治區의 문화행정부처, 또는 縣, 市의 문화행정부처 또는 문화재기구가 있다.

### 1. 문화재의 범위

고대로부터 사용된 古物, 古器, 骨董, 古董, 古玩 등의 용어는 1949년 이후 文物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최초로 <左傳>에서 사용되었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일본어로 '文化財', 유네스코에서는 '文化財產' 또는 '文化遺產'이라고 부른다.

문화재라는 단어는 考古學, 先史學, 歷史學, 文學, 藝術 또는 과학성을 가진 문화재산을 의미한다.

문화재의 분류방법은 대단히 많다. 시간에 따라서 古代文物, 近代文物, 現代文物로 나누고, 부동산 문화재는 고건축물, 石窟寺院, 古유적, 고분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화재의 질(質)에 따라서 석기, 토기, 청동기, 철기, 자기, 자기, 골각기, 玉器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

\* 건국대학교 박물관장

## II. 文물보호법

1949년 이후 文물보호법에 관한 법령, 지시와 방법이 발표되었다. 특히 黨의 11次 三中五會 이후 「中華人民共和國憲法」과 「中華人民共和國刑法」에 文物보호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었다. 그리고 이 보호법이 여러 차례의 수정과 보충을 거쳐 1982년 11월 19일 第五會 全國人民代表常務委員會 第二十五次 會議에서 「中國人民共和國文物保護法」라는 이름으로 통과되었다.

### 1. 國家文물보호의 범위

<文物保護法> 第2條 규정 : “中華人民共和國境內의 역사·예술·과학적 가치를 가진 文물은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 (1) 역사·예술·과학적 가치를 가진 古文化유적·古墳·古건축물·石窟寺院과 石刻 ; (2) 中대역사사건·혁명운동과 저명인물이 관련된 것으로 중요한 기념적 의의, 교육적 의의 그리고 사료가치가 있는 건축물·유적·기념물 등 ; (3) 역사상 각 시대의 진귀한 예술품·공예미술품 등 ; (4) 중요한 혁명문헌자료 및 역사·예술 과학적 가치를 가진 원고, 고도서 자료 등 ; (5) 역사상 각 시대를 반영하는 각 민족사회제도, 사회생산, 사회생활의 대표적 실물(實物)등 동시에 규정하기를 “과학적 가치를 가진 古취추동물 화석과 고인류화석 등도 文物과 동일하게 國家가 보호한다” 등이다.

### 2. 文물의 소유권

<文물보호법>은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의 子法이다. <文물보호법>, 文물소유권의 규정에 대하여 2조가 있다. 이 규정은 文물소유권에 대하여 3종 형식으로 다시 분류되어 있다. : 國家소유, 집단소유, 개인소유 등의 3종 소유권 중에 國家소유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되어있다.

<文물보호법> 제 4조 규정 : “중화인민공화국경내 地下·內水와 領海 중에 있는 모든 文물은 國家소유이다.”

“古文化유적, 古墳, 石窟(石窟)사원은 國家의 소유이다. 國家지정보호의 기념건축물, 古건축, 석각(石刻)등은 國家가 별도의 지정을 하지 않는 한 모두 國家의 소유이다.”

“國가기관, 부대(軍), 全民소유제의 기업, 사업조직체가 소장한 文물도 國家소유에 속한다.”

<文물보호법> 제 3조 규정 : “國가文물행정관리부처는 全國文물작업(工作)을 주관한다.” “지방 각 해당 인민정부는 그 행정내의 文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것은 文물이 國家 소유라는 중요한 표시의 하나이다.

고건축·기념건축 중에 일부분이 국가소유에 속해있지 않다. 이것은 “국가의 별도 규정”으로 되어있다. 예를 들면 역사적 명인의 사당(祠堂)이다. 이것은 가족의 조상으로부터 대대적으로 내려온 것이다. 이것은 문물행정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서 문물보호단위(文物保護單位)로 지정되어있지만 국가의 소유는 아니다.

### 3. 지하문물과 토지소유권의 관계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 10조 규정 : “농촌과 성시(城市)의 토지는 법률이 국가소유로 규정하는 외에는 모두 집단에 소속된다. : 택지·공한지·공한산(空閑山)등은 집단에 소속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조직 또는 개인도 침범, 매매, 빌려주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를 전양시킬 수 없다.” <문물보호법>의 규정은 지하에 있는 문물만 국가에 소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토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문물보호법>의 규정에 따르면 고유적, 고분의 발굴은 국가가 설립한 전문적 문물고고기구에 의해서 계획되고 실시된다. 이 기구는 발굴전에 국가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문화행정관리부처에 신고·비준을 받아야 한다.

#### 1. 고분과 가족묘의 관계

<문물보호법>의 규정은 고분은 국가소유에 해당된다. 고분은 일반적으로 신해혁명(1911년)이전의 고분을 지칭한다. 고분은 주인의 유무를 막론하고 모두 국가의 소유에 속한다. 그리고 고분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느 누구도 사사로이 발굴할 수 없다. 고분주인의 후손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고분은 모두 국가소유에 속하며 동시에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2. 문물보호관리 경비

<문물보호법> 제 6조 규정 : “문물보호관리 경비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예산에서 분담한다.” 예산계획시 문물보호관리의 주요 항목을 포함시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워 문물보호관리의 작업을 실시하고 문물관리사업의 발전을 확실하게 만든다. 문물보호관리의 주요한 항목은 보호관리, 조사·연구, 복원·발굴, 문물보호 단위지정, 진열·선전, 구매, 장례 등이다.

<문물보호법> 제 6조 규정은 각 인민정부 및 재정부처의 당해연도 예산에 올려서 지출케하고 그 경비는 문화행정관리부처가 장악해서 문물관리와 문물사업에 사용케 한다.

### 3. 문물보호의 목적

<문물보호법> 제 1조, 문물보호의 목적은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수한 역사문화유산을 계승시키고, 애국과 교육을 진행시켜 이로 인하여 사회주의정신 문명을 건설하는데 있다.

## Ⅲ. 문물보호단위

<문물보호법> 제 2장(章)은 “문물보호단위”에 관한 것이다. 이 장은 모두 9조로서 문물보호단위에 대한 선포( 발표), 보호의 취급범위분류, 보호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다.

<문물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서 문물보호단위를 국가급(國家級), 省(市, 自治區)級, 縣(市)級으로 나누고 있다. 이 3급 文物保護單位는 1基의 塔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다. 縣級문물보호단위는 省級과 국가(보)급 문물단위의 기초이다. 省級문물보호단위는 성급문화행정관리부처에서 현급문화보호단위 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것을 골라서 성급인민정부의 심사를 통하여 선포된 것이다. 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는 국가문화행정관리부처에서 성급문물보호단위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골라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공포된 것이다. 다시말하면 전국 중점문물보호단체에 속하는 모든 것은 또한 省級과 縣級의 문물보호단위에 속한다. 省級과 縣級의 문물보호단위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문물보호단위에 대한 결정은 문물보호, 관리와 교육에 목적(기초)을 두고 있다. 문물보호단위는 크게 3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 첫째, 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 두 번째, 省級문물보호단위, 세 번째, 縣(市)級文物保護單位등이다.

1961년 國務院에서 180곳의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를 선포하였다. 이것들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물의 일부이다. 1982년 국무원에서 다시 62곳의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를 발표하였다.

省·自治區·縣도 마찬가지이다. 1956년 하북성 人民委員會에서 199곳의 문물보호단위를 선포하였다. 1982년 7월 하북성의 省·縣문물보호단위는 304곳이 되었는데 그 중에 혁명유적과 혁명기념건물지가 20곳, 석굴사원이 8곳, 고건축과 역사기념건축물이 109곳이었다.

### 1. 문물보호단위 선포

<문물보호법> 제 7조 규정 : “혁명유적, 기념건축물, 고문화유적, 고분, 고건축, 석굴사원, 석각(석비)등 문물은 그것들의 역사적·예술적, 과학적 가치에 따라 급(級)별의 문물보호단위로 확정된다.”

문물조사 또는 제조사시 기본적으로 문물보호단위혁명단을 임시로 정하여 국무원과 각급 인민정부에 상정하여 그곳에서 심의 선포하여 문물보호단위로 정한다. 이것은 국가가 문물을 보호·관리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문물보호단위로 심의·선포되는 기준은 그 문물자체의 가치의 비중에 따라서 평가된다.

## 2. 문물보호단위의 급별 선포의 순서

<문물보호법>제 7조 규정 : “현, 자치현, 시급문물보호단위는 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에서 심의·선포하고 동시에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에 보고 재가를 요구한다. 이것은 즉 현급 문화행정관리부처에 문물보호단위로서의 조사·조사상황, 연구점토와 선택의 과정 그리고 그 문물보호단위의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가치를 명시하여 현급인민정부에서 심의하여 현급문물보호단위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이다.

<문물보호법>제 7조 규정 : “성·자치구, 직할시급의 문물보호단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의 심사·선포를 거쳐 국무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문물보호법>제 7조 규정 : “국가문화행정관리부처는 각급 문물보호단위 중에서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으로 중대한 가치가 있는 것은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선정하거나 또는 직접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하여 국무원에서 심의·선포하도록 요청한다.” 전국 제 1, 제 2의 중점문물보호단위는 기본적으로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선포된 문물보호단위 중에서 선택된 것이다. 때로 성급문화행정관리부처에서 취한 것은 심사·선정한 것도 있다.

## IV. 지상유물관리

문물보호단위를 六大類로 나누고 있다. : (1) 혁명유적 및 기념건축물, (2) 석굴사원, (3) 고건축 및 역사기념비적건축물, (4)석각(비)등 기타, (5) 고유적, (6) 고분 등이다.

<문물보호법>제 9~16조까지 6조는 문물보호단위 급별 분류와 관리의 범위 그리고 보호관리의 원칙과 시행상황이 명시되어 있다.

<문물보호법>제 10조 규정 : “각급인민정부는 城郷(지역)건설계획을 세울때 먼저 성향기획부처와 문화행정관리부처가 합의해서 성내 각급문물단위의 보호조치가 결정된 다음 건설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물보호법>제 12조 규정 : “보호문물의 실제적으로 필요에 근거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문물보호단위의 주위의 건설공사를 하여야 한다. 그 지역에 건물 신축 또는 기타 건설공사는 문물보호단위의 환경을 훼손 시킬 수 없다. 그 공정설계는 반드시 문화행정부의 동의 얻은 후에 지역기획(건설)부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문화유산보호법>제 13조 규정 : “건설공사의 설계시에는 문화유산보호단위와 건설공정의 과정을 위하여 사안에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현, 자치현, 시문화행정관리부와 협의하여 문화유산보호단위의 보호조치를 취한 다음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

## 1. 문화유산보호와 원상유지

<문화유산보호법>제 14조 규정 : “문화유산보호단위로 결정된 혁명유적, 기념건축물, 고분, 고건축, 석굴사원, 석각(비)등(부속건물 포함)등은 수리·보호되어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 때에는 원상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이 항은 엄격히 준수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상에는 4가지 : 1)문화유산규모(범위)와 배치 및 그 상관 관계된 것, 2) 건축결구, 형식과 재료, 3) 문화유산형식, 내용과 예술수법(수법), 4)문화유산주위의 지형과 자연환경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고건축물은 주위의 자연환경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문화유산보호단위주위의 고목도 원상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석굴사원은 크게 2대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 첫째는 寺廟와 陵園내의 석각은 사묘와 능원건축물과 함께 모종 역사적 사건(인물)과 관계가 있다. 이로 인하여 그것들의 보호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 廟宇 또는 능원의 건축은 이미 훼손되어 사라졌어도 그곳에 있는 석각은 같이 있었던 건물들의 역사적 증거가 된다. 그래서 석각 등은 함부로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된다. 세 번째, 영세하고 고립된 석각 등은 만약에 그 주위에 직접관련물이 없을 시에는 상급문화유산관리부처의 인준을 받아서 별도로 진열·보관할 수 있다. 네 번째 전국적 마애석각도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며 그 주위의 환경도 동시에 보존되어야 한다.

석각원상보호의 근본점은 석각문자(石刻文字) 및 문양의 원상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유적(고성지와 도요지 포함)과 고분은 모두 역사적 산물이다. 고유적주위의 지형, 지모(地貌)등은 고유적원상의 조성부분이다. 그것들은 고대인의 생산, 생활, 정치·군사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나의 고유적은 하나의 역사시기의 퇴적이고 그것은 또한 전후 몇 개의 역사시기의 퇴적이기도 하다. 이 몇 시기는 전후로 연결되기도 하고 때로 연결되지 않기도 한다. 고유적의 원상보호의 가장 큰 목적은 그것이 역사상에 퇴적된 상태로 교란이나 파괴되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다.

고유적이 대부분 지하에 매장되어 보통사람들에게는 이해와 중시를 받지 못한다. 고로 고유적의 보호작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고고부처에서 고유적에 대한 답사·조사작업을 충실하게 실시해서 고유적의 분포와 상화를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각급 정부는 성향(지역) 건설계획과 기본건설계획시 해당 지구의 고유적을 전체 계획에 삽입하여 보호시켜야 한다.

고분, 특히 古代帝王陵墓는 고분규모, 형제, 구축방법, 부장품의 유무와 다과등은 당시 사회 제도, 葬俗, 생산력과 기술수준을 반영하여 주고 있다. 그래서 지상제와능묘건축은 “현상유지” 또는 “원상회복”의 보호라는 명제하여 고대건축과 완전히 동일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봉토가 있는 고분은 반드시 봉토가 보호되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고분의 원상과 묘실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많은 고분의 묘실이 지상에 수축되어 봉토를 덮어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봉토는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 봉토가 파손되면 묘실도 파괴된다.

## V. 지하문물관리

지하문물은 <문화보호법>제 4조에 중에 규정된 “중국 국경내 지하, 내수(內水)왕 영해중의 유존된 모든 문물”을 지칭한다. 모든 지하문물은 국가소유에 속하며 어느 단위 또는 개인이 사사로이 발굴할 수 없다. 발견된 출토 문물은 문화행정부처 또는 문물보관기구에 신고하고 물건을 우송하여야 한다. 어느 단위 또는 개인도 그것을 은닉할 수 없으며 또한 매매할 수도 없다.

### 1. 고유적과 고분조사

문물의 조사는 각 문화행정부처의 정상적 작업이다. 관계된 부처는 사전에 조사계획을 세워서 해당 지역의 고유적(고성지, 도요지)과 고분 등을 조사하여야한다. 조사된 중요한 발견과 수확물은 상급 문화행정관리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하문물조사에는 일상적 조사, 전면조사, 중점(重點)조사와 건설공정에 따른 긴급조사가 있다.

상기한 지하문물조사 중에 건설공정에 따른 긴급조사는 <문화보호법> 제 18조규정 : “대형의 건설공사를 실시할 때, 해당 건설회사는 사전에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행정관리부처와 협의하여 건설공사 이전에 문화행정 관리부처로 하여금 조사와 시굴을 하도록 요구한다. 조사·시굴 중 발견된 문물은 공동으로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중요발견 문물은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행정관리부처에서 국가문화행정관리부처에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 2. 고유적의 보호관리

- 1) 고유적주위의 보호구역설정
- 2) 표지판(계시판)설치
- 3) 고유적에 관한 문헌자료구비

- 4) 도면자료, 고유적과 고성지의 위치도, 평면도, 발굴시, 발굴피트와 지층의 단면도와 출토유물계 도면 등 구비
- 5) 사진자료, 고유적, 고성지, 출토유물, 발굴현장 등 자세한 사진구비
- 6) 보호인 설정, 고유적에 대한 보호관리인 설정

### 3. 고고발굴관리

고고발굴은 지하문물을 보호하고 동시에 과학적 연구의 중요한 수단인 하나이다. <문화보호법> 제 16조 규정 : “모든 고고발굴작업은 반드시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속을 거쳐야 된다. 지하매장된 문물은 어느 단위 또는 개인이 사사로이 발굴할 수 없다.”

고고발굴은 두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 하나는 건설공정에 따른 고고발굴이다. <문화보호법> 제 19조 : “건설공정에 따른 고고발굴은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행정부처에서 발굴단을 조직하면서 발굴허가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문화보호법> 제 17조 :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기구, 고고연구기구와 고등학교(고고전업반)등은 과학적 연구를 위한 고고발굴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발굴계획서를 국가문화행정관리부처와 중국사회과학원의 심사를 받은 다음 국가문화행정관리부처의 비준을 얻은 후에 발굴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 이것은 순수한 학술발굴에 대한 발굴 신청방법이다. <문화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서 문화기구, 科研단위, 고등학교(고고전업반)등은 고고조사와 발굴을 실시할 수 있다.

### 4. 고고시굴의 관리

고고조사 중 해당 유적주위에 계속해서 시굴을 요할 때 계획을 세워서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행정관리부처의 동의를 얻어서 시굴할 수 있다. 단 해당유적내의 시굴은 50평방미터로 제한되어 있다. 만약 이 제한을 초과할 때는 고고발굴규정에 따라 별도로 수속을 밟아야 한다. 또한 이미 발표된 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는 재 시굴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문화정책규정에 의하면 고고시굴은 다만 고유적에 해당되지 고분에 대한 시굴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굴출토문물, 표본은 보고서 완성후 반드시 남겨놓을 문물과 표본외에는 성급문화행정관리부처에서 지정하는 곳에 보관시켜야 한다.

省(자치구, 직할시)級 文物機構는 外省, 자치구, 직할시에 가서 고고발굴을 할 수 없다.

건설공정에 따른 구제 발굴시 <문화보호법> 제 20조 : “모든 기본 건설과 생산 건설시 문물에 대한 조사와 고고발굴에 대한 비용과 노동력은 건설예산에 삽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급 계획부처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건설공사에 따른 발굴시 모든 경비는 해



당 건설단위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문물 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 “국가문화행정관리부처를 경유하여 국무원의 특별허가를 받지않을 경우 어느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도 중국경내에서 고고조사와 발굴은 할 수 없다.”로 되어있다.

만약 외국인 개인 또는 단체가 중국경내에 고고조사와 발굴을 희망할 경우 구체적 조사계획서를 외부적 정식통로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 문건은 중국문화부를 경유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은 받으면 동시에 해당 고고조사와 발굴지역의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각 해당 정부는 통지를 받은후 특허비준의 계획에 근거해서 조사를 받도록 허락한다. 조사시 수집된 유물, 발굴출토 유물, 표본과 관계자료는 모두 중국정부에 제출한다. 만약 외국인 개인 또는 단체가 문물, 표본과 자료가 필요할 경우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VI. 기타 문물의 관리

이동할수 있는 문물보호관리는 <문물보호법>에서 두가지로 나누고 있다. : 첫째, 館藏文物, 개인소장문물과 문물의 해외반출에 관련된 것과, 두번째로 문물의 複制, 탁본과 사진 촬영에 관한 건이다.

### 1. 관장문물의 관리

관장문물은 과학적 감정을 통하여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를 구비한 박물관 소장품을 표준으로 삼는다.

<문물보호법> 제 4장, 관장문물 제 22조 규정 : “전민 소유의 박물관, 도서관과 기타 단위로서 소장된 문물은 등급으로 구분하여 유물목록을 만들고, 엄격한 관리제도로 건립하여야 하며 동시에 문화행정관리부처에 등록시켜야 한다.” 국가문화행정관리부처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문물은 三級, 즉 一級品, 二級品, 三級品, 四級品 또는 一級文物, 二級文物, 三級文物로 나누어져 있다. 三級文物외의 대량의 文物藏品도 모두 등기 보관되어야 한다. 문물 分級의 목적중에 하나는 분별된 급수에 따라서 보관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문물보호법> 제 22조 규정 : “지방각문화행정관리부처는 해당 구역내의 관장문물기록을 분류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 국가문화행정관리부처는 국가일급문물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가 일급문물장품은 기록이 완성되어있다. 1982년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국가문화행정관리부처의 요구에 근거해서 일급문물장품에 대한 감정, 등록작업의 초보단계를 완성시켰다. 국가일급문물장품 등기표는 문물소재단위에서 보관하는 외에 성과 국가문화행정관리부처에서 각각 1, 2 부씩 보관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 23조 규정 : “전민소유의 박물관, 도서관과 기타 단위의 문물장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이러한 단위의 문물장품의 장소이동, 교환시에는 반드시 국가문화행정관리부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을 받지 않고는 어느 단위 또는 개인도 문물을 이동시키지 못한다.” 이 규정에는 4가지 요구사항이 있다. : 1. 문물장품의 매매금지, 전민소유의 문물소장단위소의 소장된 문물은 전민소유에 속하며 집단 또는 개인소장단위의 私産은 아니다. 2. 문물의 장소이동, 교환은 반드시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국가 일급문물장품의 대여에도 반드시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 수속은 문물의 장소이동, 교환과 동일하다.

## 2. 流散文物관리

<문화재보호법> 제 25 조규정 : “개인 소장의 문물을 폭리를 위하여 파는 것도 금지되며, 외국인에게 사사로이 파는 것도 금지한다.” 이 규정은 법률상으로 개인 소장의 유물이 외국에 빠져 나가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개인소장문물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 24 조규정에 “문화행정관리부처가 지정한 단위(장소)에서만 팔 수 있다.” 개인소장의 대대로 내려온 문물은 문화행정관리부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매물로 취급한다는 내용이다.

문물과 구공예품의 관계는 <문화재보호법> 제 2 조에 국가보호의 문물범위로 정하고 있다. : “그것들은 역사 상 각 시대의 진귀한 예술품, 공예미술품”등이다. 소위 역사상 각 시대는 역사문물각도에서 논하면 신해혁명(1911년)이전의 각 역사시대를 말한다. 소위 “珍貴”는 무릇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를 구비한 것으로 이것들은 모두 진귀한 공예품 범위에 속한다.

문물선택작업은 유산문물관리 중의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다. <문화재보호법> 제 2조규정은 “은행, 야련소, 종이공장 및 구물자 회수부처에서도 문화행정관리부처와 공동책임으로 폐기물속에 쓰여있는 金銀器와 폐구물자 중의 문물을 찾아내어야만 한다. 만약 은행연구소 등에서 필요한 역사적 화폐는 은행등에 보관시킬 수 있지만 기타는 문화행정부처에 넘겨야 한다. 넘겨진 물건은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은 폐기물속에서 문물을 찾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 3. 문물의 해외반출

<문화재보호법> 제 6장, “문물해외반출”중에서 제 27조와 28조는 문물해외반출문제를 규정 짓고 있다. : “문물의 해외반출과 개인휴대의 해외반출은 반드시 사전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 문화행정관리부처가 지정한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행정관리부처에서 감정을 받은 다음 해외반출증을 발급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반출되어야 한다. 감정에 의해서 반출이 불가능 한 것을 가져고 나갈 경우 정부(국가)가 그것을 회수 한다.”

#### 4. 문물복제, 탁본(印), 촬영의 관리

<문물보호법> 제 8장 부칙 제 32조규정 : “문물의 복제, 탁본(인), 촬영 등의 관리방법은 국가문화행정관리부처에서 제정한다.”

문물의 복제 : 문물의 복제품(비석복제 포함)은 모두 일률적으로 국가규정에 따라서 복제품의 문물연대, 출토지점, 시대외에 복제단위를 표시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문물탁본 : 비석을 세우는 것은 중국의 오랜 전통이다. 모든 석각(문자·문양조각), 彫像, 마애석각, 묘지등은 다만 文物機構 만이 拓印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은 자료로서 보존되어야 하며, 탁인의 수량도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어느 단위 또는 개인도 문화행정관리부처의 인준을 받지 않고 사사로이 탁인 할 수 없으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 문화행정 관리부처에서 제공 받을 수 있다.

문물촬영 : 1. 박물관 진열품에 촬영이 금지된 것은 “請勿拍照”(촬영금지) 표말을 붙여야 한다. 외국인은 미 개방된 지구 또는 발굴장에 가서 촬영할수 없다. 만약 필요시 국가 문화행정관리부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문물에 대한 TV촬영, 영화 등 기타 촬영은 성급과 국가문화행정부처에 심사를 허가받아야 한다.

문물서간에 대한 촬영은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국내는 문화행정관리부처와 관계를 맺고 국외는 관계된 부처와 협의하에서 가능하다.

## VII. 문물보호기구의 임무와 장려

이 내용은 <문물보호법> 제3조, 제15조, 제29조, 제30조와 제31조에 명기되어 있다.

문물보관기구의 건립과 임무: <문물보호법> 제 3조규정: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구역내의 문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각성, 자치구, 직할시와 문물이비교적 많은 자치구, 현, 자치현, 시는 해당지역내의 문물작업을 위하여 문물보관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제 15조규정에는 “문물보호단위가 국가소유의 기념건축물 또는 고건축으로 결정될 때 박물관, 보관소 또는 참관실을 건립할 수 있다.”로 명시되었다.

문물보호관리기구의 임무 : 시·현(시)급 문물보관기구는 지방정부기구이다. 이 기구는 기초(기층)문물사업단위이기도 하다.

시·현(시)급 문물보관기구의 임무는 지방정부기구이다. 이 기구는 국가문물법규의 규정에 따라서 건립된 지방문물사업단위이다. 현(시)급 문물보관기구는 기초(기층) 문물사업단위이기도 하다.

시·현(시)급 문물보관기구의 임무는 해당행정구역내의 문물보호관리, 조사연구·수리보

수, 발굴과 진열작업을 책임맡는다. 그리고 상하급 문물보관기구의 차이는 업무지도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 1. 장려

<문물보호법> 제 29 조규정 :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국가로부터 정신적 장려와 물질적 장려를 받을수 있다.” :

- 1) 문물정책법령을 충실히 이행하여 문물보호에 업적이 많은자.
- 2) 문물보호와 범법행위에 대하여 과감히 싸운 자.
- 3) 개인이 소장한 중요 문물을 국가에 헌납한자.
- 4) 발견된 문물을 곧 보고하고 우송하여 문물을 보호한 자.
- 5) 문물보존을 위하여 창조 또는 공헌을 한 자.
- 6) 문물이 파괴될 순간에 그 문물을 구제한 자.
- 7) 문물작업에 장기적으로 종사하여 공로가 많은 자.

문물 보호에 대한 장려는 문물보호에 공헌이 많은 단위나 개인에게 명예 또는 물질장려를 실시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문물보호법>을 선전·관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2. 징벌

<문물보호법> 제 30조와 제 31조 규정은 징벌의 규정이다. 제 20조는 행정처벌규정이고, 제 31조는 법에 의한 형사책임규정이다.

### 1) 행정처벌

<문물보호법> 제 30조규정 : “다음 예에 해당되는 자는 행정처벌을 받는다.” :

(1) 지하, 내수, 영해 및 기타 장소에서 발견된 문물을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으며 국가(정부)에 물건을 넘기지 않은자는公安부처(치안부처)로부터 경고 또는 벌금이 부여되며 불법으로 소유한 문물은 회수된다.

(2) 문화행정관리부처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사적으로 문물의 매매행위를 할 때 공상행정관리부처로부터 경고 또는 벌금을 받으며 동시에 불법적으로 소득한 것 또는 불법경영의 문물은 회수된다.

(3) 개인소장자의 문물을 외국인에서 팔때는 工商行政관리부처로부터 벌금을 부여받으며 그 문물과 불법소득된것은 몰수 된다.

문화행정관리부처와 문물기구는 공안(치안), 공상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상술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 3. 형사책임

<문물보호법> 제 31조 규정 :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자는 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는다.” :

- (1) 국가문물을 훔친자.
- (2) 진귀문물을 몰래 해외에 반출하거나 문물투기 활동을 한자. 엄중문책.
- (3) 고의로 국가보호 진귀문물을 파괴한자.
- (4) 국가공무원이 직무에 태만하여 진귀문물을 파괴 또는 유실시킨 자. 엄중문책.

상기한 4가지 조항은 첫째, 고문화유적, 고분 등을 도굴한자, 두번째, 개인소장의 진귀문물을 외국인에게 팔거나 진귀문물을 해외에 반출한 자, 세번째는 4항으로 문물관계 종사자가 문물을 훔치거나 유실할 때 따라서 엄중처벌을 한다는 내용이다.

## Ⅷ. 省·市·자치구 박물관 작업 條例

(1979년 6월 29일(79) 文物字 第 149호 통지문)

### 1. 총칙

제1조 : 省·市 자치구 박물관은 국가가 관리하는 지방의 종합성 또는 전문성의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文物과 표본(標本)을 주로 소장하는 기구로서 교육하는 기구이며 과학을 연구하는 기구이다. 박물관은 중국 사회주의 과학 문화 사업의 중요한 조직 부분이다.

제2조 : 박물관장은 당연히 맑스 레닌 모택동 사상의 지도하에 工農兵의 복무를 실시하여 사회주의 복무의 방향으로 나아가며 “옛것을 오늘날에 활용(古爲今用)”하는 방침과 여러 조항의 문물작업 정책을 관철시켜 뚜렷한 민족 성격(風格)과 지방 특색의 사회주의 박물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 박물관은 문물 표본을 수집하여 과학적 연구를 거쳐서 진열 전시해서 역사와 과학 문화 지식을 전파하고 일반인들에게 애국주의 교육과 사회주의 교육을 실시해서 전 국민의 과학 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하도록 공헌하여야 한다.

제4조 : 성·시·자치구 박물관은 지(시) 현 박물관이 박물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박물관 작업 경험의 전체적 결과와 교류를 추진시켜야 한다.

## 2. 소장품

제5조 : 박물관 소장품은 국가의 귀중한 과학 문화재이며 박물관 업무 활동의 기초가 된다. 소재지 박물관의 성질과 임무에 의해서 소재지 범위 내의 고고학 발굴에 의한 유물, 기증품, 문물의 수집, 표본의 채집 및 박물관 상호간의 물품 교류 등에 의해서 모여진 물품으로 한정한다. 유물 수집작업시 지역민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 연구되어야 하며 과학적 기록을 하여야 한다. 고대 역사 문물도 중시하고, 근 현대의 문물도 중시하여야 하며, 특히 혁명 문물(사회주의 시기 문물 포함)과 민속(民俗)문물도 수집하여야 한다.

제6조 : 박물관은 소장품의 보관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 창고와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박물관 소장품 보관 시행 방법>을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 보관 작업을 위하여 건전한 방법을 채택하고, 품목 장부를 정확히 기록하며, 감정을 정확히 하고, 품목 목록을 잘 갖추고, 보관을 잘해서 검사시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품목의 복제품, 倣製品, 代用品도 반드시 표시하여 혼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박물관 책임자와 종사자들은 특히 一級 소장품(국보급)은 특별히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문물 안전 규정의 행위에 위반하면 처벌을 받으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한다.

대여, 물품의 교환 시는 반드시 상급 기관의 허락(비준)을 받아야 하며, 일급 품목은 국가 문물국(우리의 문화재 관리국에 해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 소장품 보호에 필요한 과학 기술의 연구를 장려하고 조건에 따라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전문 인원을 보충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상응한 설비도 가능하다. 전통 경험의 결집과 발전을 위하여 선진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소장품의 감정, 보관, 수리, 복제와 표본 제작 등의 과학적 실험을 진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문물 보호의 과학적 기술의 수준을 계속 증가시켜야 한다.

## 3. 진열(전시)

제8조 : 진열은 박물관 작업의 중심부분이며 박물관 작업 양의 중요한 표지이다. 성실한 작업으로 박물관 성질과 지방 특색에 맞는 특징의 기본 진열을 하여야 한다. 지방 종합성 박물관은 지방 역사(혁명사 포함)를 중점적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특색있는 진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훌륭한 기본 진열은 동시에 훌륭한 전시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제9조 : 진열은 상당히 높은 사상성, 과학성과 예술성을 갖추어야 하며 역사 유물주의와 변증 유물주의 원칙을 따라서 계급투쟁, 생산투쟁과 과학실험 등의 세 가지 혁명운동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역사와 자연발전의 객관적 규율을 반영하여 일반인이 자기의 역사를 인식하고 창조역량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 진열은 원래 박물관 소장품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문물과 자료의 운용은 반드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역사의 객관적 실체를 존중하고 實事求是를 견지하며 그것들을 고치거나 왜곡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 : 진열의 설계는 반드시 형식과 내용이 통일되어야 하며 전용성, 미관성, 경제와 민족 고유의 풍격이 갖추어져야 한다. 예술 표현의 운용은 점차 현대화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진열된 주제를 부각시키는데 적용되게 하여야 한다. 진열설계 문제의 제시는 진열설계 작업 경험에서만 축적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 4. 관람객에 대한 작업

제12조 : 관람객에 대한 작업은 박물관 관람객이 대상이다. 그 일은 교육을 담당한 제 일선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그 일의 주요 임무는 관람객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서 진열된 전시품을 선전 교육에 응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안내인(설명인)은 관람객에게 열심히 하여야 하며 자기의 직업을 사랑해서 전문 지식을 터득하여 높은 수준의 설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점의 선명성, 내용의 정확성, 역사와 문물의 결합성 등을 생동감있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 : 박물관의 성질과 진열의 내용을 근거해서 문화 강좌를 개설하여 학교교육에 배합시키며 선전 자료와 이동 전시 등을 준비하여 과학 보급 및 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의 친구들(博物館之友)”을 조직하여 관람객들의 친목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

제14조 : 관람객 안내(설명)경험을 통하여 업무 문제를 제기해서 점차 발전된 선전 도구로 사용해서 교육선전의 효과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 5. 과학적 연구

제15조 : 박물관의 각종 업무 활동은 모두 과학적 연구의 기초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박물관은 박물관학과 관련된 전문학과의 연구 작업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전문학과의 연구는 지역 박물관의 성질과 임무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소장품을 기초로 해서 문헌 자료와 결합시켜 진열·전시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연구하며 동시에 전문 학술 논문·전문 서적 등을 편찬하여야 한다. 기초 자료 수집과 국내의 박물관 작업의 정보도 수집하며 관계 부문의 전문학과의 연대 연구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 : 박물관의 과학적 연구 작업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근거하여 미래의 계획을 수립하고 가까운 미래와 장기적 계획을 수립·구분하여 경중과 완급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안배하여야 할 것이다. 특수한 박물관은 전문가에

게 조수를 배정하여 전문가와 조수의 협조 방법으로 과학적 작업에 종사시키며 따라서 과학적 인원도 배양(교육)시켜야 한다. 또한 학술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자문을 받고 문제점을 회의에 상정해 그 결과와 지도를 받아야 한다.

## 6. 기구 조직

제17조 : 박물관은 黨委 영도하의 관장에게 작업 분담의 책임을 주어야 한다. 民主集中制의 원칙에 따라서 전 박물관을 정치사상 공작, 업무 공작과 后勤工作으로 나누어 전체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實事求是의 발휘와 관람객 유도의 우수한 상황을 전개시켜 黨의 노선, 방침, 정책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제18조 : 박물관의 업무 기구는 精簡(정확 명료한)원칙과 지방 박물관의 실제 수요를 확정하여 진열, 보관, 직원 등의 부분으로 나누어 일을 하여야 한다.

박물관의 后勤工作은 업무와 과학적 연구 방법을 진행시키고 직원들의 업무 조건과 생활 조건을 개선시켜야 한다.

박물관의 각 업무 분야는 명확한 책임 범위가 요구되며 강도 높은 책임제가 실행되어야 한다.

## 7. 건설(정비)

제19조 : 지도 간부는 맑스주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준의 기초 위에서 업무, 관리를 배워서 점차적으로 전문가로 변해야 한다. 대오의 정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박물관 전직원을 맑스레닌주의·모택동 사상을 학습시키고, 연구와 업무에 몰두하도록 장려하며, 과학 문화 수준을 향상시켜서 전문가로 만들어야 한다. 黨의 간부 정책과 지식 분자 정책을 명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특기를 살려서 인사 조치도 하여야 한다.

제20조 :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채용하여 업무 인원으로 훈련시켜야 한다. 모종 기술성이 강한 전통공예는 훈련반을 모집해서 선생과 제자 간의 유대를 徒弟의 방법으로 훈련시켜야 한다. 그로 인해서 박물관 직원의 업무 기술 수준이 부단히 향상될 수 있다.

제21조 : 업무 인원의 점차적인 충원은 상대적으로 온정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직원들에게 매주에 5/6의 업무 활동 시간을 주어야 한다. 박물관 직원의 학술·기술직책·고시(시험)·진급 및 상벌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8. 부칙

제 22조 :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박물관은 실제 상황을 근거하여 참조 집행하면 된다.

## 〈참 고 문 헌〉

1. 李曉東, 1988. 『文物保護管理概要』(文物出版社) 1~133.
2. 國家文物事業管理局 編, 1987. 『新中國文物法規選編』(文物出版社) 1~331.
3. 王宏鈞 編, 1990. 『中國博物館學 基礎』(上海古籍出版社) 401~405.
4. 최무장, 1989. 「중국의 문화재 정책」 『美術史學』 68~81.